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12. 0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09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조문 정비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 안 제17조제1호의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같은 조 제4호의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설치·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을 삭제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6.11.9.]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